

계약직원근무성적평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계약직원의 각종 인사 및 보수지급 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게 실행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산학협력단에 재직 중인 모든 계약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정원칙)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과 근무 태도를 평정하며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2.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한다.
 3.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수행상의 난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4. 각 평정요소를 상호 연관시키지 말고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절대평정으로 한다.

제4조(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1호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5조(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8.12.1, 2011.4.18., 2012.8.1.)

1. 1차 평정은 각 사업단장이 한다.
 2. 2차 평정은 산학협력팀의 해당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한다.
 3. 3차 평정은 산학협력단장이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소속의 계약직원의 평정은, 1차 평정은 해당팀장, 2차 평정은 산학협력단장이 한다.(개정 2012.8.1.)
- ② 제1항 제1호의 사업단장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제5조 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에 설치된 사업조직을 말한다.(개정 2008.12.1, 2011.4.18., 2013.10.1)

제6조(평정기간 및 시기) 근무평정의 평정기간은 연1회, 2월말에 실시한다.(개정 2015.3.1.)

제7조(평정의 제외대상) 평정대상자가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타 사유로 평정일 현재 산학협력단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 및 행정조교, 계약직 연구원에 대하여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1., 2015.3.1)

제8조(평정의 채점 및 활용)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수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채점 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1, 2011.4.18)

1. 사업단 소속 계약직원의 평가는 사업단장 50%, 산학협력팀장 20%, 산학협력단장 30%의 비율로 채점한다.(개정 2010.1.1, 2011.4.18, 2011.9.1., 2012.8.1.)

2. (삭제 2008.12.1)
3. 산학협력팀과 연구지원팀 소속 계약직원의 평가는 해당팀장 40%, 산학협력단장 60%의 비율로 채점한다.(개정 2010.1.1, 2011.4.18, 2011.9.1., 2012.8.1.)
 - ② 제1항의 평정결과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은 평정점수의 10%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평정 한다.
 - ③ 평정결과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며, (삭제) 하위 10%인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

제9조(동점자의 순위) 근무성적 평정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1.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
2. 장기 근무한 자

제10조(평정의 비공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타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평정업무의 관리) 산학협력단 계약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업무는 산학협력단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개정 2008.12.1., 2013.1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개정 2013.10.1.)

계약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평정지침		1. 평정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각 평정요소는 상호 연관시키지 말고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소속	산학협력단	사업단			직급	계약직	성명	
담당 직무		평정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속(업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속(업무)		

(해당란에 ▽ 표)

구분 평정요소		평정내용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미흡	평정 점수	최종 조정점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	직무지식	담당업무와 관련된 제 규정과 법령의 숙지 및 실무지식과 경험의 숙련정도	10	8	6	4	2		
	이해판단 표현력	주어진 업무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10	8	6	4	2		
	업무신속성 및 신뢰도	주어진 업무를 신속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하고 업무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	10	8	6	4	2		
	업무개선 기여도	전례나 관행에 얹매이지 않고 업무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해당부서의 업무를 발전적으로 개선한 정도	10	8	6	4	2		
	업무의양/수준 및 노력도	맡은 업무의 양과 수준(난이도)을 감안한 업무처리 실적 및 노력의 정도	10	8	6	4	2		
근무태도	서비스 정신	직무수행에 있어 구성원 및 외부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정신의 정도	10	8	6	4	2		
	협조성	조직구성원으로 불평불만 없이 인화를 위하여 구성원간의 원만한 협조관계 유지하는 정도	10	8	6	4	2		
	근무태도	출·퇴근 등의 기본적인 제 규정 준수 및 행사 등의 참여정도	10	8	6	4	2		
	도덕성	산학협력단 직원으로서의 청렴한 근무자세와 윤리관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정도	10	8	6	4	2		
	적극성 및 책임감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수행하며 자신의 일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도	10	8	6	4	2		
10개 항목			계 (100점 만점)						

특이사항 및 평정자의 종합의견	
------------------	--

※ 평정의 결과는 폐평정자의 인사고과에 반영됨에 따라 본인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정을 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소속(사업단)		직위		성명	(인)